

# 학생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

## ① 사고발생



## ② 사고통지 접수

※ 학과/단과대학 → 건강관리센터 : 아래 첨부파일 포함하여 공문 접수

### ■ 첨부파일

1. 개인정보처리동의서
2. 사고경위서(부서장 확인 서명 필수)
3. 재학증명서(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)
4. 학생이 학교 시설물/수업/행사/동아리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학교의 확인 증빙서류 첨부
  - 시설물 : 학교 시설물 이용 중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자료(사진 및 영상 등)
  - 수업 : 출석부 사본 등
  - 행사 : 학생활동신청서, 안전사고예방교육 시행 결과보고서, 안전사고예방계획 및 비상대응 체계 수립 행사 관련 공문 및 행사승인서 사본 등
  - 동아리 : 동아리활동 사전계획서 등



## ③ 병원 치료 진행



## ④ 보험금 청구

※ 학생 → 건강관리센터 : 본인 직접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 제출

### ■ 구비서류

1. 병·의원 및 약국 영수증(카드매출전표불가)
2. 진료비세부내역서
3. 진단서(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4. 입원 시 입·퇴원확인서, 수술 시 수술확인서
5. 본인 통장사본



## ⑤ 보험금 지급

### ▣ 유의사항 ▣

1.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.(1인 최고 5백만원 한도)
2. 사고발생 후 사고통지 공문 접수해야하며, 180일 이내 보험금청구를 권고합니다.
3. 교외활동은 반드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관(허가)하고, 교직원이 인솔한 행사에 한해서 보상가능합니다.
4. 교외활동인 경우, 차량으로 이동 시 교통사고 및 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적용 범위가 아니므로, 이동 차량업체 보험 가입 및 보상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.
5.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므로 기재사항을 직접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허위기재 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,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6. 의문사항에 대해 보험담당자가 사고사항에 대한 연락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.
7. 상급병실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며, 진단서 발급비는 포함이 안됩니다.
8. 보험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되며, 보험금 지급 소요예상기간은 약 3-4주입니다.

※ 문의 : 건강관리센터(학생회관 1층)(☎629-7283)